

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합519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문상배, 강재신, 신보관, 최준영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8. 12. 24. 체결된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2 기재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D(E생)에게 위 1.항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와 C은 부부사이로, 피고는 원고의 딸이고, C은 원고의 사위이다.

나. 원고의 3억 2,000만 원 교부 등

1) 원고는 2015. 12.경 C에게 3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C은 원고에게 위 금원에 관하여, 2015. 12. 31. 120,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20.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같은 날 200,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20.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각 작성·교부하였다(이하 위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다. C의 사업개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1) C은 2015. 12. 21. D으로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주택 전면부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각 임차하고, D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C은 2016. 2. 1.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G횃집’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3) 이후 C은 2018. 10. 18. ‘G횃집’을 폐업하고, 피고는 같은 상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8. 10. 12. 개업하였다.

4) C은 2018.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D, 피고 등과 합의하여 그 임차인을 C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만 2억 원 남짓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동래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C에 대한 3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합계 1억 3,000만 원을 아내인 피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인 임대인 D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거나, 가액배상인 임대차보증금 상당 1억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C에게 지급한 3억 2,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이다.

2) 피고는 C의 영업부진 및 채무누적으로 인해 부득이 생계유지 수단인 'G유흥집'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C도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이를 토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3억 2,000만 원은 증여금이 아닌 대여금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3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비록 피고와 C 사이에서는 생계유지 수단인 ‘G횃집’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남편인 C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온전히 현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형태의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임대인인 D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2018. 12. 24.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한혜진, 판사 신승아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부산 동래구 H

[도로명 주소] 부산 동래구 I

대 158㎡

2. (건물)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슬래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학원, 소매점) 및 주택

1층 92.96㎡,

2층 92.96㎡,

3층 82.04㎡,

4층 58.07㎡,

지하 34.20㎡ 중 2층 전부 및 3층 주택 약 45㎡, 끝.

[별지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표시

1. 가. 채권자 : D

나. 채무자 : C

다. 채권 내용 : D와 C 사이에 체결한 위 별지1 기재 부동산의 표시 2.항 중 2층 92.45㎡ 전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의 반환채권.

2. 가. 채권자 : D

나. 채무자 : C

다. 채권 내용 : D와 C 사이에 체결한 위 별지1 기재 부동산의 표시 2.항 중 3층 주택 전면부 약 45㎡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의 반환채권. 끝.